

# 제2회 원자력 혁신유공 시상 추진계획

2025. 9. 3. (수)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1. 목 적

- 원자력 분야 산업의 성장 및 혁신에 기여한 산학연 관계자·단체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 혁신 동기를 부여하여 원자력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에 기여

## 2. 추천기준

- 훈 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개인 4, 단체 1)
- 추천자격 : 원자력 분야 발전 및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연구개발 성과 창출·확산, 기반조성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추천 제한

표창대상	추천제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li><li>-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li><li>-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li></ul>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li><li>- 사회적 물의 야기로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li><li>-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li><li>-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li><li>-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li></ul>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수상 가능)</li></ul>

※ 이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24. 3. 6.) 준용

### 3. 수상자 선정절차(안)

후보자 공모	예비심사* (후보자 선정)	추천서 제출 (심사결과 보고)	종합심사	수상자 확정
9. 5. (금) ~ 9. 26. (금)	10. 1. (수)	10. 13. (월)	10월 중	10월 말
3주간	심사위원회 개최 및 후보자 선정	원산협회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 <심사위원회 개요>

- 구 성 : 정부, 산학연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 심사기준 : 기술성, 창의성, 경제성, 공헌도, 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4. 수상자 안내

- 선정통보 : 수상자 개별통보
- 시 상 식 : 11. 13. (목) / 신라호텔 제주 (2025 원자력 CEO 추계포럼개회식)

###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9. 5. (금) ~ 9. 26. (금) 18:00까지
-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 또는 미비서류는 무효 처리

제출서류

- ① (자체양식) 추천 공문 1부
- ② (서식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부
- ③ (서식2) 공적조서(개인용, 단체용) 1부
- ④ (서식3)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⑤ (서식4) (공무원만 작성)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 ⑥ 이력서 (자유양식) 1부

- 제출방법 : 추천서류 일체를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원산협회 포상 담당자 ([award@kaif.or.kr](mailto:award@kaif.or.kr))

경영기획처 김진현 대리 02-6257-2542, 장혜린 연구원 02-6953-2082

#### 붙임 1. 장관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 2. 추천 제한사항 조회 방법 1부. 끝.

# 붙임1 장관표창 추천 서식

【서식1】

##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원자력 혁신 유공

연번	개인/단체*	소속	직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적개요	표창문안(80자 이하)
1	12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주사보	주무관	800100		홍길동	20년 07월	총리("05.12) 장관("07.04)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4~5줄 이내로 작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	10	SK텔레콤	부장	-			성춘향				
3	23	(주)응답	-				단체	-	장관("05.06) 장관("03.07)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 < 작성요령 >

-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 대외직명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과기정통부 인사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 <개인>민간인 10 외국인 11 공무원 12 사립학교 교원 13 타부처공무원 14 // <단체>중앙행정기관 20 지방자치단체 21 공공기관 22 민간단체 23 군부대 24
-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 위 양식을 **엑셀로 제출 요망**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 (17) 란은 재직경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 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범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KFTC website's main navigation menu. The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menu, a grid of links is displayed. The link '체불사업주명단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Business Entities)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Other visible links include '행정정보공표목록',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법령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통계', and '기타정보'.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The screenshot shows the '범위반사실조회' (Scope of Violation Search) page.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전체' (All). The search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dropdown menu for the number of results per page, currently set to '10'. The search results table is currently empty, showing '데이터 없음' (No data). The table headers are '번호' (No.), '연도' (Year), '피심인명' (Name of the Person Being Investigated), and '조치유형' (Type of Action).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er/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고용노동부).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 and '이용안내'. The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Underneath, the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Defaulting Business Owner Name Disclosure) link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page content is organized into a grid of categories such as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법령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통계', and '기타정보'.

##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행정정보공개 +
- 정책실명제 +
- 청렴정책공개 +
- 공공데이터개방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법령정보 +
- 국고보조사업 +
- 재정정보공개 +
- 자산운용 +
- 고용노동통계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 2021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1.12.31.~2024.12.30.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가나다순  교역순

전체  10개씩

전체  지역-전체  업종-전체  [검색](#)

중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
----	----	------	----------	----------	--------